建築法施行規則의 改正內容 解說

韓 奎 峯

建築法이 75. 12. 31 法律 第2852号로 改正 公布되고 뒤이어 施行令이 改正(大統領令 第8090号, 76. 4. 15)된후 불과 半年사이에 建築法施行規則이 세차례나 改正하게 되였다.

改正된 內容을 보면

建設部令 第172号(76. 6. 21)에서는 排煙設備의 基準, 헤리콥타 離着陸場의 設置基準, 昇用昇降機의 設置台数 基準 및 工場의 植樹基準等에 関한 改正(新設)이 있었으며

1976. 7. 28에는 建設部令 第175号로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土地의 形質変更許可와 建築許可를 同時에 할 수 있도록 改正한바 있다.

이번에 建設部令 第 号(76. 10.)로 改正된 內容은

畜舍用 建築物의 許可申請図書를 簡素化 시켰으며

昇用昇降機의 設置台数 基準을 改正하고

竣工検査를 申請할 때 市 郡에 따라 雜多하게 具備書類를 要求하는 폐단을 防止하려는 것이 그 內容이다.

1. 畜舍用 建築物의 許可申請図書

施行規則 第1條 第1項에 但書를 新設하여 棟当 50M² 以下의 畜舍는 垈地內에 있는 여러 棟의 畜舍 延面積의 合計에 関係없이

- 垈地의 範囲를 證明하는 書類
- 附近 案內図
- 平面図 및 配置図

만을 添付하면 建築許可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改正條文 內容

第1條(建築許可 申請等) ①……(從前과 같음)……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棟当 延面積 50 평방미터 以下의 畜舍用 建築物에 있어서는 当該 垈地의 範囲를證明하는 書類와 다음 表의 (1) 난에 게기하는 該当 図書(立面図를 除外한다)에 限한다.

2. 昇用昇降機의 設置台数 基準

施行令 第129條의 規定에 의거 승용승강기를 設置할 때에는 居宅의 延面積 規模에 따라 昇降機의 台数를 定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 8人昇을 1台의 基準으로 하고
- 16人昇이 넘는것을 2台로 보도록 하였으며
- 5層以下의 層에 있는 居室로서 그 直上에 6層以上의 層이 없는 部分의 居室面積은 昇降機를 設置할 居室面積에서 除外하도록 하였다.

그럼으로 6人昇인 昇降機는 2台라야 1台로, 8人昇以上 15人昇까지도 1台로, 16人昇以上이면 모두 2台로 計算되고,

5層以下의 低層部에 있는 居室中 그 直上部에 6層以上의 高層部가 없는 部分의 居室은 設置対象面積에서 除外하였음으로 昇降機設置에 対한 規定은 완화된 것이다.

※ 改正條文 內容

제22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① 영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대수(8인승을 기준으로 하며, 16인승 이상을 2대로 본다)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 거실면적의 합계	3,300 평방미터 미만	3,300 평방미터 이상 6,600 평방미터 미만	6,600 평방미터 이상
집회장·전시장·호텔·병원·백화점	1	3	매 3,300평방미터이내마다 1대의비율로 증가
여관·사무실	1	2	
기 타	1	1	

② 5층이하의 층에 있는 거실로서 그 직상에 6층이상의 층이 없는 부분의 거실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거실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竣工申告書의 添付書類

別紙 第6号書式으로 定한 준공(동별준공)신고서에는 添付書類가 없으나 市 郡에 따라 多様하게 具備書類를 要求하고 있는 実情임으로 添付書類의 要求를 規制할 目的으로 必要不可避한 다음 두가지만을 添付하는 것으로 改正하였다.

- 액상폐기물 정화조 검사필증 사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 제53조의 5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그럼으로 工場이나 浄化槽를 設置해야 하는 建築物을 竣工申告할때에 限해서 위 두가지中 該当 書類를 添付하고 其他의 경우는 一切의 添付書類가 不必要한 것이며 許可申請時 浄化槽設置신고필증을 添付하도록 하는 一部 市·郡에서의 모순점도 시정될 것으로 본다.